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061 |
|----------|-------|

발의연월일 : 2026. 5. 26.

발 의 자 : 곽상언 · 김 윤 · 장종태
문금주 · 김 현 · 박용갑
박선원 · 권향엽 · 강득구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

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p> | <p>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 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
| <p>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 ② (생 략) <u><신 설></u></p> | <p>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u></p>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
할 수 있다.